아름다운 변화 양주

【검토보고서】

2015.10.20(화)
제262회임시회

양주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전태언】

양주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 제안자 : 양주시장(회계정보과)

○ 제출일 : 2015년 10월 07일

○ 검토일 : 2015년 10월 08일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 수정, 보완이 필요한 현행 조례의 조문에 대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알기쉽고 간결하게 조정하기 위해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함

○ 제3조의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으로‘한 차례만’연임할 수 있음을 명시

○ 제5조의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심의 방법 등에 관하여 조항 추가

○ 제8조의 의견청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을 추가

○ 제10조에 위원의 제척사항 추가

○ 제12조 별표의 위원회 참석 수당을 당초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조정

○ 제13조를 개정하여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4. 검토의견

가. 법령검토

○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내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 개정안에서는 계약심사위원회의 운영, 심사위원의 심사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나. 정책 및 내용검토

○ 안 제2조 제2항에서 계약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양주시 재무관으로 정한 것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1]에서 정한 위원장의 선정범위(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에 해당되어 적정하며

○ 안 제5조 제2항에서 회의소집 3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위원에게 제공토록 한 조항은 심의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1)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②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 안 제1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될 경우의 심사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는 필요한 규정이며

○ 안 별표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원으로 10만원으로,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추가지급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서면심사시의 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으나 이는 「2016년 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40page)을 적용한 것임.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단가(2016 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참석수당	일 당	· 기본료(2시간) : 100,000원 · 2시간 초과 : 50,000원	
사이버위원회 참석비	일 당	· 기본료(2시간) : 50,000원 · 2시간 초과 : 20,000원	위원회 서면심사시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적용

○ 그 외에 안 제3조 제2항에서의 위원의 연임 제한, 안 제5조 제3항에서의 위원회 서면심의 근거 마련, 안 제13조에서의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근거 마련 등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

다. 형식검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음.

라. 절차검토

○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